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영향과 대응

본회 생활전자과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 20여년간 존속되어 오던 「수입선다변화제  
도」를 오는 6월말 전면 폐지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전자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란에서는 지난 1월 28일 산업연구원에서 본회 박제린 상무를 비롯한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기 제목의 정책토론회 내용중 우리  
전자·정보 산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 편집하였음(편집자)

## I. 동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 가. 도입배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대일무역역조 해소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1977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1980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에 근거를 마련 본격 시행해 왔다.

### 나. 현 황

동제도는 1997년 CCCN 4단위 기준으로 7개 품목에 대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 1980년에는 대상 품목이 206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9년 HS기준 262개였던 다변

화 품목수는 대일역조 확대로 인해 1993년까지 258개로 별다른 변동은 없었으나, 1994년 UR타결로 인해 동제도를 더이상 유지하기 곤란하여 1996년에는 162개로 대상품목을 축소한 상태이다.

또, 1997년말에는 IMF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우리정부는 동제도를 1999년 상반기까지 전면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1998년 6월 40개, 12월에 32개 품목을 해제하여 1999년 1월 현재 16개 품목만 남아 있다.

### 다. 동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다변화제도는 유치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균형 등 그동안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측

면도 있지만, 국내산업 보호기간 장기화로 인한 불공정 관행, 통상마찰 및 국민 후생증대 도모 등에는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이었는데 WTO체제 출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동제도는 더이상 존립 명분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 II. 동제도 해제에 따른 영향과 대응

동제도가 1999년 6월말로 해제됨으로써 국내시장은 수입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경쟁은 날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본란에서는 지난 1월 28일 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관련 정책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체 산업측면에서 볼때, 다변화해제가 교역에 미친 효과

는 반드시 대일수입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무역특화지수변화를 보더라도 해제 직후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다변화 해제영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국내 관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측면에서는 최근까지 동제도 적용품목들이 국내 경기 침체와 엔화강세로 수입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국내 경기가 회복돼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고급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다변화 해제 품목의 수입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동제도 운영으로 산업경쟁력이 회복된 품목의 경우 기존제품은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하나, 다변화제도 해제후 신제품 개발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개발이 안된 부품의 경우 해제 이후에도 부품수입이 불가피함으로써 일본기업에 의해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이전, 부품공급 기피 등 일본이 직접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제 이후 무역특화지수 변화 전망>

(단위 : 품목수, %)

부 문	크게 악화	다소 악화	불 변	다소 개선	크게 개선
전기/전자	6(30.0)	5(25.0)	6(30.0)	2(10.0)	1(5.0)
전 산 업	20(18.0)	23(20.7)	37(33.3)	21(18.9)	10(9.0)

주) ( )는 비중임

(자료:산업연구원)

### <해제 이후 수입 변화 전망>

(단위 : 품목수,%)

부 문	20%이상감소	20~0%감소	0~10%증가	10~20%증가	20~40%증가	40%이상증가
전기/전자	3(16.7)	2(11.1)	1(5.6)	2(11.1)	2(11.1)	8(44.4)
전 산 업	7(6.9)	14(13.9)	25(24.8)	19(18.8)	15(14.9)	21(20.8)

주) ( )는 비중임

(자료:산업연구원)

다변화 해제후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전망해 볼때 산업전체로는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된 품목은 31개, 악화된 품목은 43개로 악화된 품목이 다소 많았으며, 전기·전자의 경우는 개선된 품목이 3개 품목, 악화된 품목이 11개 품목으로 나타나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제이후 수입변화 전망을 보면, 전자·전기 분야의 수입은 13개 품목(전체비중 66.6%)이 증가될 전망이며, 감소는 5개 품목(27.8%)으로 나타나 동제도 해제후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화 해제이후의 대응정책 방안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긴급수입 제한조치(세

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부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보호장치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법규나 제도 정비, 수입과 관련된 민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수급자위원회, 수입조합 기능 강화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

### III. 동 제도 해제에 따른 전자업계 애로 제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영향과 대응」 관련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본회 박재인 상무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먼저 전자업계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동제도 폐지후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수입선다변화제도가 그동안 우리 전자산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발제자와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입을 억제하였다는 증거이며 또한 전자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켰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동안 해제된 품목들의 수입동향으로 보아 동제도가 완전 폐지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지난해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 외환부족 등으로 수입이 감소된 것이지 해제품목의 경쟁력이 있어 수입이 감소된 것만은 아니며 둘째, 지금까지 해제된 품목은 그나마 어느정도 여건이 되어 해제된 것이지만, 나머지 품목 즉, 대형 TV(디지털TV포함), VCR 등은 현재 해제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대외여건 변화로 부득히 동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유망하나 유치한 품목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서 동제도를 해제하기보다는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등에 의해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동제도를 해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산업기술개발자금(시제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97	'98	'99	비고
전 체	2,300	2,200	2,260	40(증가)
전 자	430	410	400	10(감소)

### <원화/엔화의 환율변화 추이>

구 분	'98. 12. 31	'99년				
		1/14	1/18	1/25	1/29	2/1
원화(₩/\$)	1,207.80	1,186	1,181.5	1,180	1,175	1,175.30
변동률(%)	기준	1.8	2.2	2.3	2.8	2.8
엔화(¥/\$)	113.45	111.93	114.33	113.95	116.35	115.90
변동률(%)	기준	1.3	-0.7	-0.4	-2.4	-2.1

(자료: 한국은행)

이를 전제로 우리 업계의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산업연구원측에 요청하였다.

· 첫째, 유망유치 품목(예: 디지털 TV, VCR 등)은 해제여건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부득이 해제해야 하므로 다른 정책수단 즉, 정부의 대폭적인 R&D 개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완책을 강화해야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세이프가드는 일단 산업피해 발생시 사후적인 조치의 성격이므로 다른수단에 의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 피해 사례로서는 대만산 마

더보드 수입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해 수입이 감소되고 국내 업체들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동 관세가 원상태로 환원된 후에는 국내 마더보드 산업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따라서 사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써 전자분야 산업기술개발자금(시제품)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동 자금은 업체의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개발 지원으로 기술력 향상과 수입 규모가 크고 향후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자본재 개발로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7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 둘째, 소비자를 위해 수입제품

의 사후관리(A/S),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원산지 표시규정 등은 국내제품과 동일하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수입 전기용품 사후처리요령 제 9조에 의하면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사후봉사(A/S)체제가 항시 구축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사후봉사 A/S 체제는 A/S에 필요한 장비, 조직, 인원, 교육, A/S보증기간 및 보증방법, 표시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동 규정을 국내업체들은 잘 지

그 피해 사례로서는 '97년 1월 멕시코 소니TV가 미국산 소니TV로 둔갑되어 수입이 급증했고 소비자들은 사후에 다중방송불가 등의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수입제품에 대한 A/S 형식승인, 원산지표시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후에 개선된 사실이 있다.

· 셋째, 원화절상,엔화절하가 수입선다변화 제도 해제와 맞물려 수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환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전자제품의 경우 1,250~1,300원선에서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필요한데 작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통한 통상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열악해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통상 반덤핑 제소 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되나 정부지원액이 너무 적어(소요비용의 50%, 2,000만원 한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소요기간의 과다(총소요기간 21개월)로 중소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 즉, 반덤핑 제소가 성공적으로

수 · 입 · 선 · 다 · 변 · 화 · 해 · 제 · 영 · 향 · 과 · 대 · 응

수 · 입 · 선 · 다 · 변 · 화 · 해 · 제 · 영 · 향 · 과 · 대 · 응

키고 있는 반면, 소규모 수입업체 또는 저가의 수입전기용품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자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동 규정의 존재여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무상 A/S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3~8년임)

원산지 표시 규정도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6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를 “최종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옆면·후면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전면표시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원화대 달러는 2.8%가 절상된 반면, 엔화대 달러는 2.1%가 절하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 넷째, 산업피해 구제신청시, 자료수집·작성, 변호사 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절차 및 서류간소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수입선다변화 해제 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결론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사전적인 정부의 지원 시책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정부지원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며, 예산집행 시점은 조사 완료 후에서 조사 시점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지원규모도 2,000만원 한도(총소요 비용의 50%지원)에서 4,000만원 한도(총소요 비용의 80% 지원)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정기간도 총소요 기간이 10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